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	2015. . .	
연월일	(제 회)	

암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정진엽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1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암검진을 통한 암의 조기발견·치료를 위하여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 및 간암 검진 주기를 변경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(상피내암 포함) 발생 증가 추세에 따라
연령 기준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
- 나. 간암 조기 발견을 위해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

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간암의 검진주기란 및 자궁경부암의 연령기준 등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6개월
20세 이상의 여성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자궁경부암검진 시행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2016년 1월 1일 이후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연 락 처	(044) 202 - 2515